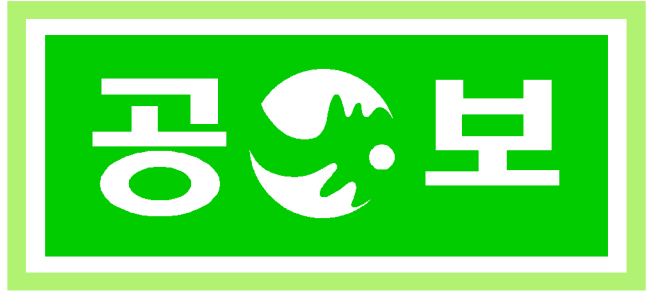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1082 호 2017. 8. 24. (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155호[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21호선)사업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156호[도로명주소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15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932호[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942호[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1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 - 1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21호선)사업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2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복구(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21호선)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오토벨리로2공구:송정IC~화봉2지구)사업 개설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화봉·송정동일원

3. 사업개요 : 대로2-21호선(L=1.5Km, B=30m, A=97,09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기간

(당초) 2009. 05. 14. ~ 2017. 06. 30.

(변경) 2009. 05. 14. ~ 2017. 08.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청 도시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과(☎052-241-7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156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지내골길 4-2(상안동)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8.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제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삼안동 410-33	울산광역시 북구 지내골길 4-2 (삼안동)	2017-08-24	기존 지명인 지내골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759-14	울산광역시 북구 하원지2길 5-2 (창평동)	2017-08-24	기존 자연마을인 하원지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B 11L, 13L	울산광역시 북구 번영로 648 (진장동)	2017-08-24	중남구를 연결하여 통시발진을 기하는 대표적인 도로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4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198-1 외 1필지(무룡동200-4)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993-7 (무룡동)	2017-08-24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6B 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9길 24-12 (진장동)	2017-08-24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9B 1-6-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36-5 (진장동)	2017-08-24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9B 1-7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36 (진장동)	2017-08-24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30B 4-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4길 32 (진장동)	2017-08-24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15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하원지2길 9(창평동) 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 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8. 24.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하원지2길 9 (창평동)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759-14	2017-08-24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4길 32 (진장동)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춘지구 30B 4-2L	2017-08-24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7 - 932호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민법(2011.3.7.개정, 2013.7.1.시행)을 개정하여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고,
- 종전의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의 효력을 2018. 6. 30.까지 존속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개정(제20조제2항제1호)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강사의 자격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분야 또는 전문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야 하므로,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별표 서식 개정(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의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식 개선
-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 종전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효력은 2018.6.30.까지 존속함에 따라 경과규정 마련

3.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52-241-7282, 팩스번호 : 052-241-7269

5. 기타사항

일부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별지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486호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강사의 자격 등)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생교육센터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p> <p>1. <u>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p> <p>2. ~ 5. (생략)</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부구 규칙 제486호 울산광역시 부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p> <p><신 설></p>	<p>제20조(강사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p> <p>2.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부구 규칙 제486호 울산광역시 부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p> <p>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의 <u>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u></p>

신·구 별지서식 대비표

[현행]

[별지 제4호서식]

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서(앞면)

접수번호		강좌명	
신 청 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년 월 일	(성별 : 남, 여)
	연락처	전화 :	이메일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센터의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절 ----- 취 ----- 선 -----

수 강 중			
접수번호 : _____			
강좌명		개강일시	
성명		수강기간	~ (개월)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년 월 일 (성별 : 남·여)	강의장소	
담당자	(전화 : _____)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구청장은 강좌의 내용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서(앞면)**

접수번호		강좌명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년 월 일	(성별 : 남, 여)
	연락처	전화 :	이메일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센터의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절 ----- 취 ----- 선 -----

수강증			
접수번호 : _____			
강좌명		개강일시	
성명		수강기간	~ (개월)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년 월 일 (성별 : 남·여)	강의장소	
담당자	(전화 : _____)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구청장은 강좌의 내용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북구 평생교육 수강신청에 앞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북구 평생교육센터에서는 평생교육 신청서 접수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북구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신분확인(본인 여부),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의 이용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및 사유 :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련된 업무추진 기간 내

【 개인정보 동의 및 거부 권리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 북구 평생교육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강좌 수강료의 울산광역시 북구 세외수입 처리 및 적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에 한해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제1항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 - 942 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1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업명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5. 공고기간 : 2017. 8. 18. ~ 2017. 9. 6. (20일간)

6. 이전설치장소

연번	이전 설치장소	비 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 16길 (재활용 수집 거점 장소)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환경미화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연암동)

○ 팩스 : 052-241-78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052-241-7804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